##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92

발의연월일: 2024. 9. 9.

발 의 자:정준호·임호선·김태선

서영교 • 이춘석 • 민홍철

이기헌 • 민병덕 • 진선미

이연희 · 이학영 · 안태준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, 전송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,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·설명 등의 요구(이하"열 람등요구"라 함)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에서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, 수수료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그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, 정보주체에게 수수료가 과도하게 청구됨으로써 열람등요구를 포기하게 만들어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가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

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 도록 규정하여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,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38조제3항). 법률 제 호

##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3항 본문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"를 "가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"로, "청구할"을 "산정하여 청구할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수수료·우송료 산정 및 청구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	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		
①・② (생 략)	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		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	③		
구를 하는 자에게 <u>대통령령으</u>	<u>가명처리에</u>	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	소요되는 비용 등 열람등요구		
우송료(사본의 우송을 청구하	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대		
는 경우에 한한다)를 <u>청구할</u>	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		
수 있다. 다만, 제35조의2제2항	법에		
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			
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	<u>산정하여 청구할</u>		
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			
를 산정할 수 있다.			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		